

건축물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규제 완화 (예시1)

기관명	건의자	연락처	소관부처
	○○○	051-000-0000	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건물에 기반시설(상·하수도, 전기, 가스, 통신 등)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굴착하여 기반시설(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 등)을 매설하여야 하며, 도로법 제61조에 의거 해당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(굴착) 허가를 득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함.
- 도로점용(굴착)허가는 도로의 유지관리, 교통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도로포장 3년[보도 2년] 이내에는 허가할 수 없으며, 다만 건축물의 전기·전기통신·상하수도·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,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에는 가능토록 제외규정을 두고 있음.

【 신축건물 기반시설 공급 절차도 】



- (문제점) 제외규정의 길이, 너비에 따른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건물신축 시 불가피하게 제한길이, 너비를 초과할 경우 기반시설 공급 불가로 건물 이용에 제한이 발생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사유재산 활용 침해로 인해 극심한 민원발생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.

-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의 경우 도로노면 포장관리에 더 취약하며 굴착공사 시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음에도 불구하고 굴착 길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허가기준에 형평성 결여됨.

□ 건의내용(개선방안)

- 도로포장 3년이내(보도는 2년)라 하더라도 신축건물(증축 포함)에 한하여는 신축건물 할 수 있도록 필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도로 굴착은 가능하도록 굴착공사 제한에 대한 제외규정의 제한사항¹⁾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허가대상(소규모 굴착공사)²⁾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하여 법령해석 혼돈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

□ 개선효과(기대효과)

- 신축건물(증축 포함)에 대한 과도한 굴착 제한 완화로 사유재산 활용 침해방지 및 노후건물 개량 활성화로 주거환경 개선 도모
- 소규모 굴착공사에 대한 법령해석 혼돈을 없애고 행정 형평성 일관화 추진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

1) 제한사항 : 건축물의 전기·전기통신·상하수도·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,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
2)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허가대상 :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(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)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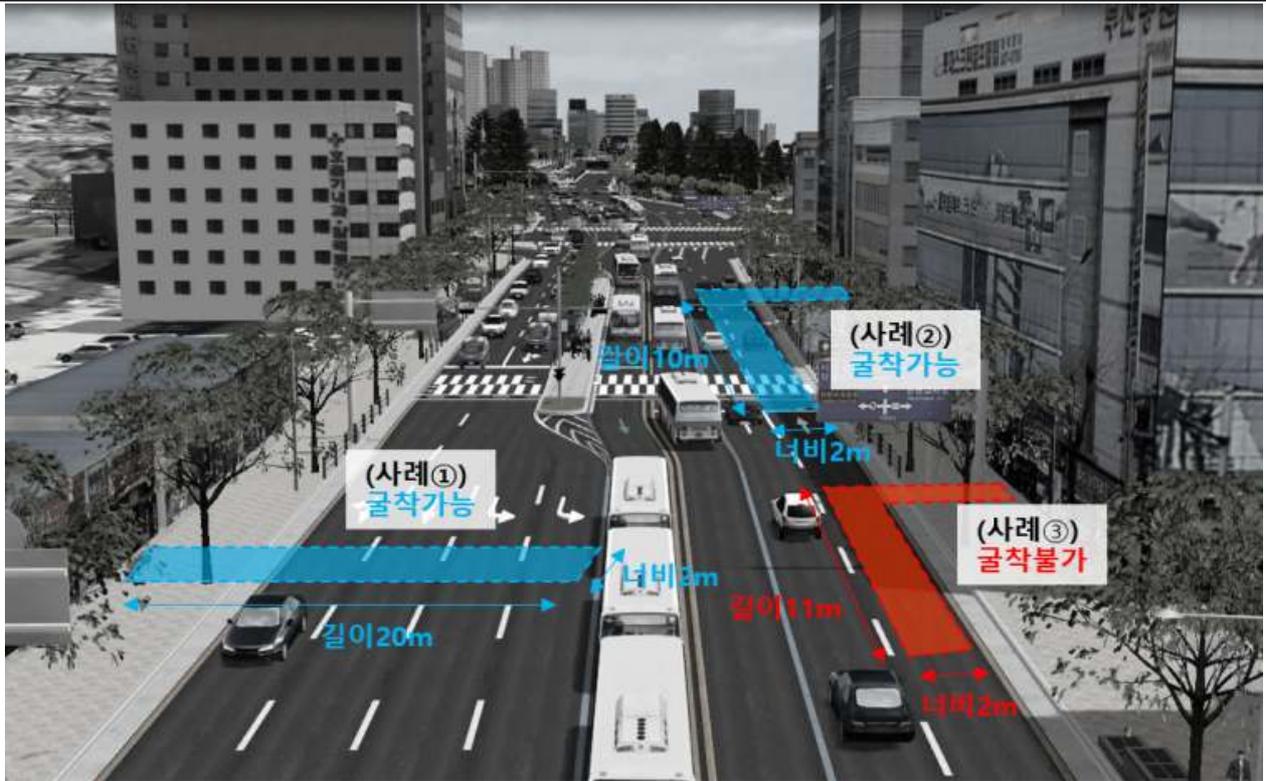
□ 법령 등 개정(안)

○ 도로법 시행령

현 행	개 정(안)
<p>제56조(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 등) ①~⑤ (생 략)</p> <p>⑥ 신설·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·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(보도인 경우에는 2년)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4. 11. 24.></p> <p>1.~6. (생 략)</p> <p>7. 기존 주택지역 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·전기통신·상하수도·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,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</p> <p>8. (생 략)</p> <p>⑦ (생 략)</p>	<p>제56조(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서 등) ①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기존 주택지역 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·전기통신·상하수도·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,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인 경우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
참고

【예시】 도로점용(굴착)허가 가능여부 현황



연 번	규 모	내 용	가능여부
사례①	길이 20m, 너비 2m 횡단굴착	도로법 시행령 제56조6항의 7에 의거 도로포장한지 3년 이내의 신규포장도로라 하더라도 '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굴착공사' 에 해당	도로굴착 허가 가능
사례②	길이 10m, 너비 2m 종단굴착	도로법 시행령 제56조6항의 7에 의거 도로포장한지 3년 이내의 신규포장도로라 하더라도 '길이 10미터 이하,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' 에 해당	도로굴착 허가 가능
사례③	길이 11m, 너비 2m 종단굴착	굴착길이 10m 초과하여 '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, 너비 3 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' 에 해당되지 않아 도로점용(굴착) 허가 불가에 대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없음	간섭을 신축하더라도 수도전기통신가스 공급이 어려워 건물사용 불가

참고

도로법 시행령 개정사항 [시행 2016. 11. 15] [대통령령 제27588호, 2016. 11. 15, 일부개정]

<p>도로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472호, 2016. 8. 31, 타법개정]</p>	<p>도로법 시행령 [대통령령 제27588호, 2016. 11. 15, 일부개정]</p>
<p>제56조(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)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·물건, 그 밖의 시설(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)을 신설·개축·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(이하 “굴착공사시행자”라 한다)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·4월·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~7. (생략) ②~⑦ (생략)</p>	<p>제56조(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) ① _____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0미터(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)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</u></p> <p>_____</p> <p>1.~7. (현행과 같음) ②~⑦ (현행과 같음)</p>

※ (당시 개정이유)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해당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를 초과하면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, 앞으로는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**소규모 도로굴착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한 완화**

⇒ 2016년 법령 일부개정 시 소규모 도로굴착공사의 규모를 완화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항의 굴착제한 제외사항의 규모는 완화되지 않아 소규모 도로굴착공사의 규모에 대한 혼돈 초래 및 종단굴착길이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신축건물에 대한 민원발생 야기

고압가스 저장설비에 대한 고압가스법 적용기준 개선 [예시2]

기관명	건의자	연락처	소관부처
	ㅇㅇㅇ	051-000-0000	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현 황) 산업에 활용되는 가스는 다양함. 가스 사용이 많은 기업들은 고압가스(액화가스 등) 저장탱크를 설치, 운영하고 있으며,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은, 비독성 액화가스의 경우, 저장소 저장능력이 5톤 이상, 산소 등 특정고압가스 액화가스저장설비 경우는 25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에 적용됨.
 - 동법 적용 대상 고압가스 저장소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신고·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함.
 - 제출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와 그 실시기록을 작성·보존해야 함.
 -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교육 이수 및 정기검사도 요구됨.
 - 저장탱크 및 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나, 30m 이하 거리 또는 같은 구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 적용함.
- (문제점) 다수 기업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에 따르는 추가 업무와 인력운영 부담을 피하고자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저장탱크(5톤 미만 등) 설치가 많아 고압가스 저장시설 운영 효율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.
 - 4.9톤 저장시설에 충전 시, 잔량 및 안전공간 확보 등을 고려하면, 3톤정도 충전에 그쳐, 수시로 충전해야 함.
 - 국가적으로 가스 충전 횟수가 많으면, 인력, 장비 투입이 많아지고, 고압가스 차량 운행횟수 증가 따른 차량안전사고 및 충전 조작 중의 위험성도 커짐.
 - 위 저장탱크와 함께 LGC용기(저장능력 169kg)도 사용(1~2개) 시, 합산 저장능력이 법 적용기준을 넘게 되어 미신고·미허가 불법사업장이 됨.

- 기존 저장탱크 사용 가스와 다른 가스 필요 시 용기 형태로 사용하나 합산적용이 되지 않는 30m 거리 확보가 어려운 사업장 많음.
- 가스설비 간 30m 이격 위해 용기를 실내 또는 공장 뒤쪽 배치 시, 밀폐 공간 소재, 수작업 이동애로, 긴 연결호수 등으로 질식, 파손, 누출 위험 큼.
- 동 법 시행규칙 별표1의 단서내용으로, 질소, 탄산 등 불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소화설비용 저장탱크 및 용기는 합산에서 제외하면서도, 산업체 사용 동일한 불연성가스(질소, 탄산)에 대해서는 합산 적용함.
- 또한, 가연성으로 위험성이 더 높은 LPG는 저장탱크만 합산하고 용기는 합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됨.
- 한편으로, 산소 LGC용기(저장능력 169kg)를 사용하는 병원, 활어센터 등에서는 중단없는 산소 공급을 위해 예비 충전용기를 상시 준비해야 해 법 적용 기준인 저장능력 250kg을 넘고 있어, 미신고·미허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음.
- 일본의 경우, 동 신고기준은 3톤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12배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,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 많음.

□ 건의내용(개선방안)

- 생산능력 확대 지원 차원에서, 비가연성/비독성 액화가스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저장능력 기준 상향 조정
 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2항1호의 ‘액화가스 : 5톤’ 문구 뒤 단서내용에 ‘비가연성/비독성 가스는 5.5톤’ 추가
- 가스안전설비 기술발전 감안과 35년 전 기준을 현실화하는 차원에서,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1항1호의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 대상 기준인 ‘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’ 문구 뒤에 ‘다만, 비가연성 / 비독성 특정고압가스의 경우는 3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 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’ 를 추가요망.

□ 개선효과(기대효과)

- 고압가스 저장능력 확대를 통한 신규 작업 분야 확대 원활화 가능
- 고압가스 안전거리 기준 확보 애로로 별도 장소 운영업체 불편 해소 및 관리 효율화
- 고압가스 저장시설 대폭 확충 시, 가스공급 차량 방문 및 충전 횟수 감소로 가스공급 안전성 증대 효과

□ 법령 등 개정(안)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, 제46조

현 행	개 정(안)
<p>제2조(정의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"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.</p> <p>1. 액화가스 : 5톤. 다만,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(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)을 말한다.</p> <p>제46조(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)</p> <p>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</p>	<p>제2조(정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"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.</p> <p>1. 액화가스 : 5톤. 다만, <u>비가연성/비독성 가스는 5.5톤</u>,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(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)을 말한다.</p> <p>제46조(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)</p> <p>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<u>다만, 비가연성/비독성 특정고압가스의 경우는 3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려는 자(신설)</u></p>